



(고용노동부) 가공·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
[시행 2020. 12. 28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517호, 2020. 12. 28., 일부개정.]

고용노동부(산업보건기준과), 044-202-8871

1. 가공·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

구분			허용기준
가공·변형을 위해 유통되는 경우			1%
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	원석 그대로 또는 단순히 파쇄된 상태	분말 제품	불검출
		인체 직접 접촉 용도	
		바닥골재(주차장, 운동장 등에 사용된 것)	
		조경석	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
		기타	0.1%
	기타 가공·변형된 상태		0.1%

2. 재검토기한

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0-517호, 2020. 12. 28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